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농정과



구내식당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지하 1층 구내식당
사업규모	중식 약 70명 이용		
사업목적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6,549	29,886	13,202	16,684	-6,66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549	29,886	13,202	16,684	-6,6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684	
구내식당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경정(11,210원*6시간*1명*248일)-기정(11,210원*6시간*1명*82일)	= 11,165	
		· 유급휴일수당 : 경정(67,260원*1명*68일)-기정(67,260원*1명*22일)	= 3,094	
		· 명절휴가비 : 경정(375,000원*1명*2회)-기정(375,000원*1명*1회)	= 375	
		· 조리원 4대보험료 : 경정(22,005,000원*14%)-기정(7,360,000원*14%)	= 2,050	

□ 예산요구 사유

-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
-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적정 운용

□ 예산증감 사유

- 구내식당 조리원(기간제 근로자) 연간 잔여일수 보수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2월 : 구내식당 개소
- 2023. 1월 ~ 12월 : 구내식당 운영
- 2024. 1월 ~ 12월 : 구내식당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및 구내식당 운영 개시
2023	- 구내식당 운영
2024	- 구내식당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7,953	717	-	7,236	
2023	36,549	20,934	-	15,615	
2024	13,202	1,922	-	11,28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위계민	담당자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감 이부영	전화	4258
-----	-----	----------	-----	---------------------	----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0,000	80,000	70,000	10,000	10,000	
국비	35,000	40,000	35,000	5,000	5,000	
도비		0			0	
시비	35,000	40,000	35,000	5,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농촌인력 증개센터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출장비 : 경정(3,000,000원*10월+150,000원*10회)-기정(2,400,000원*10월)	= 4,500	
		· 홍보용 전단 제작(리플렛 및 포스터) : 경정(50원*10,000매)-기정(40원*10,000매+100원*6,000매)	= -500	
		· 현장실습 교육비 : 경정(20,000원*250명)-기정(20,000원*200명)	= 1,000	
		· 농작업 참여비 : 참여자 교통비: 경정(5,000원*5,600명)-기정(5,000원*4,800명)	= 4,000	
		: 참여자 숙박비: 경정(20,000원*200명)-기정(20,000원*300명)	= -2,000	
		: 참여자 간식비: 5,000원*600명	= 3,000	
		· 작업반장 수당 : 경정(10,000원*10명*50일)-기정(10,000원*2명*200일)	= 1,000	
		· 영농작업용 비품 및 도구 구입 : 경정(3,000,000원)-기정(4,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인력증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도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80,000천원)에 따른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0월 : 24년도 사업대상자 공모
- 2024. 1월 : 2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2024. 2월 ~ 2024. 12월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2024. 12월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2023	- 2023년 6월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 - 2023년 12월 말 기준 399건 인력중개
2024	- 2024년 3월 중 운영 개시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	-	-	-	
2023	70,000	35,455	-	34,545	
2024	70,000	-	-	7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위계민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매월 863부		
사업목적	농업인에게 최신 경향의 농업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기술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3,000	65,377	48,467	16,910	12,377	
국비		0			0	
도비	15,900	19,613	14,540	5,073	3,713	
시비	37,100	45,764	33,927	11,837	8,66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910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구독료 : 경정{(신문6,800원*493명*12월)+(소식지5,000원*212명*12월)} - 기정{(신문7,600원*492명*12월)+(소식지5,000원*60명*12월)}	= 4,533	
		· 여성농업인신문 구독료 : 6,500원*158명*12월	= 12,377	

□ 예산요구 사유

- 온라인 정보취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유통기술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업관련 동향 등의 정보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사업규모 매월 552부 → 매월 863부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월 : 농업소식 신문 및 소식지 구독계약
- 2024. 2월 ~ 12월 : 매일 농업소식 신문 및 소식지 제공
- 2024. 12월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한국농어민신문 : 7,600원*415명*12월 = 37,848천원(10%자부담) - 월간친환경 : 6,000원*69명*12월 = 4,968천원(10%자부담) - 월간새농사 : 5,000원*21명*12월 = 1,260천원(10%자부담) - 한국농업신문 : 6,000원*200명*12월 = 14,400천원(10%자부담)
2023	- 한국농어민신문 : 7,600원*375명*12월 = 34,200천원 - 월간친환경 : 7,000원*53명*12월 = 4,452천원 - 월간새농사 : 7,000원*15명*12월 = 1,260천원 - 한국농업신문 : 6,000원*180명*12월 = 12,960천원
2024	- 2월 중 사업 추진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52,671	52,628	-	43	-
2023	53,000	52,872	-	128	-
2024	48,467	-	-	48,467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위계민	담당자	농업9급 황재은	전화	4254
-----	-----	----------	-----	----------	----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한강노을빛체험휴양마을(하성면 봉성리 일원)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1,720	19,786	22,259	-2,473	-1,934	
국비	10,860	0			-10,860	
도비		5,936	6,678	-742	5,936	
시비	10,860	13,850	15,581	-1,731	2,990	
기타		4,946	2,473	2,473	4,94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73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무장 활동비 : 경정(2,061,000원*12개월*80%)-기정(2,061,000*12개월*90%) =	-2,473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사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
-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자부담액 10% → 20%로 변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2024. 12월 :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매일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2022년 1월 ~ 12월 사무장 활동비 지급
2023	- 2023년 1월 ~ 10월 사무장 활동비 지급
2024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0,682	20,146	-	536	
2023	21,720	21,719	-	1	
2024	22,259	-	-	22,259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위계민	담당자	행정6급 손승원	전화	4252
-----	-----	----------	-----	----------	----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한강노을빛체험휴양마을 외 2개소
사업규모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뫼마을)		
사업목적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장치 마련 및 관광객 유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584	1,741	1,681	60	157	
국비	990	1,088	1,050	38	98	
도비		0			0	
시비	594	653	631	22	59	
기타	396	435	419	16	39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험가입비 : 경정(725,000원*3개소*80%) - 기정700,000*12개월*80%)	60	

□ 예산요구 사유

-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2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관련 기본계획 시달 및 수립
- 2024. 3월 ~ 10월 : 보험가입 수요조사(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집행
- 2024. 11월 ~ 12월 :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체험안전보험)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피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화재보험)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피마을)
2023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체험안전보험)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피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화재보험)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피마을)
2024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584	1,584	-	-	
2023	1,584	1,584	-	-	
2024	1,681	-	-	1,681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위계민	담당자	행정6급 손승원	전화	4252
-----	-----	----------	-----	----------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3,941개소		
사업목적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42,611	290,060	500,820	-210,760	-52,551	
국비	0	0	0	0	0	
도비	102,783	87,018	150,246	-63,228	-15,765	
시비	239,828	203,042	350,574	-147,532	-36,786	
기타	114,200	96,686	166,940	-70,254	-17,51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76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307-06 보험금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경정(290,060천원)-기정(500,820천원) · 보험료 : 유형별 보험 단가 상이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 - 보조비율 : 도비 11.25%, 시비 26.25%, 자부담 12.5%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	-210,760	

□ 예산요구 사유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여
-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 보호로 사회안전망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258(2024.01.04.)호와 관련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2024. 12월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지급
- 2024.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사업량 : 6,065건(농기계종합보험 1,149건, 농업인안전보험 4,916건) - 집행액 : 333,384천원(농기계종합보험 142,469천원, 농업인안전보험 190,915천원)
2023	- 사업량 : 6,404건(농기계종합보험 1,205건, 농업인안전보험 5,199건) - 집행액 : 336,304천원(농기계종합보험 135,063천원, 농업인안전보험 201,241천원)
2024	- 사업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66,256	333,384	-	32,872	
2023	342,611	336,304	-	6,307	
2024	500,820	-	-	500,82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62대		
사업목적	고령, 중소 농업인, 여성농업인들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15,050	208,100	63,550	144,550	-6,950	
국비	0	0	0	0	0	
도비	64,515	62,430	19,065	43,365	-2,085	
시비	150,535	145,670	44,485	101,185	-4,865	
기타	215,050	208,100	63,550	144,550	-6,9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550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경정(208,100,000원)-기정(63,550,000원) · 총사업량 : 16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관리기 : 1,500,000원*115대=172,500,000원 - 전동분무기 : 150,000원*37대=5,550,000원 - 전동전지가위 : 1,000,000원*5대=5,000,000원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 5,000,000원*5대=25,000,000원 	= 144,55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 약자와 농업을 시작하는 소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7월 ~ 2023. 8월 : 수요조사 실시
- 2024. 2월 ~ 2024. 3월 : 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2024. 4월 ~ 2024. 6월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 2024. 7월 ~ 2024. 12월 : 보조금 집행 및 결과보고·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보행관리기 지원 : 47대 - 전동전지가위 지원 : 10대 - 소형트랙터 지원 : 2대 - 전동분무기 지원 : 2대
2023	- 동력운반차 : 2대 - 보행기관리기 : 111대 - 소형트랙터 : 3대 - 전동분무기 : 22대 - 전동전지가위 : 7대
2024	- 사업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2,500	82,500	-	-	
2023	215,050	199,955	-	15,095	
2024	63,550	-	-	63,55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여민구	담당자	행정7급 최효선	전화	4279
-----	-----	--------	-----	-----	----------	----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7.1ha		
사업목적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등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8,279	9,563	14,140	-4,577	-18,716	
국비	0	0	0	0	0	
도비	8,484	2,869	4,242	-1,373	-5,615	
시비	19,795	6,694	9,898	-3,204	-13,101	
기타	28,279	9,563	14,140	-4,577	-18,71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77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 경정(9,563천원)-기정(14,140천원) . 품목별 지급 단가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 잡초매트 : 320원/㎡	-4,577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연질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으로 농촌의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기여
- 잡초매트 지원으로 농지의 제초제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예방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3049(2024.02.07.)호와 관련 「2024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2024. 2월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4. 3월 ~ 2024. 11월 : 환경친환경농자재 공급 및 보조사업 집행
- 2024. 12월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농가수 : 68호 - 지급면적 : 53.1ha - 지급금액 : 70,067천원
2023	- 농가수 : 12호 - 지급면적 : 6.2ha - 지급금액 : 28,279천원
2024	- 사업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77,790	70,067	-	7,722	
2023	28,279	28,279	-	-	
2024	14,140	-	-	14,14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고추재배 농가
사업규모	1,160㎡		
사업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기반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
	위임규정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6,500	14,500	12,250	2,250	-2,000	
국비	6,600	5,800	4,900	900	-800	
도비	0	0	0	0	0	
시비	9,900	8,700	7,350	1,350	-1,200	
기타	16,500	14,500	12,250	2,250	-2,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5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경정(25,000원*1,160㎡*50%)-기정(25,000원*980㎡*50%)	= 2,250	

□ 예산요구 사유

- 고추재배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0월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3. 11월 ~ 12월 : 사업 신청
- 2024. 1월 ~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4. 5월 ~ 11월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4. 12월 : 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농가수 : 1농가 - 지급금액 : 7,392천원
2023	- 농가수 : 1농가 - 지급금액 : 8,250천원
2024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0,833	7,392	-	23,441	
2023	16,500	8,250	-	8,250	
2024	12,250	-	-	12,25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여민구	담당자	행정9급 김호정	전화	4285
-----	-----	--------	-----	-----	----------	----	------

선택형맞춤농정(전환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60,000	465,000	947,506	-482,506	105,000	
국비	0	0	0	0	0	
도비	72,000	93,000	189,502	-96,502	21,000	
시비	288,000	372,000	758,004	-386,004	84,000	
기타	360,000	465,000	947,506	-482,506	105,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2,506	
선택형 맞춤농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선택형맞춤농정사업 : 경정((690,000천원*1개소*50%)+(100,000천원*1개소*50%) +(140,000천원*1개소*50%)) - 기정(637,670천원*3개소*50%)	= -482,506	

□ 예산요구 사유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소득작물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2816(2024.02.02.)호와 관련 「2024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4. 2월 ~ 2024. 11월 : 사업추진
- 2024.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사업량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집행액 : 100,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등 지원
2023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배연구회) - 집행액 : 360,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배생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2024	- 사업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00,000	100,000	-	-	
2023	360,000	360,000	-	-	
2024	947,506	-	-	947,506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1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 3회		
사업목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안정적인 학교급식 실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280	42,800	2,800	40,000	35,52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7,280	42,800	2,800	40,000	35,52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학교급식지원 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경정(2,800천원)-기정(2,800천원)	=	0
	207-01 연구용역비	·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 경정(40,000천원)-기정(0천원) - 인건비 : 2,070천원*6명*2개월 - 경 비 : 여비 및 유인물비 7,000천원 - 기 타 : 8,160천원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먹거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계획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비 요구에 따른 예산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원안가결	-	-	-	-	-	-	-
일자	2023.11.	-	2024.2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월 :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 수립
- 2024. 3월 ~ 6월 : 용역 실시
- 2024. 7월 : 용역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6회 -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활동 : 6회 - 영양(교)사 역량강화교육 : 4회
2023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회
2024	- 사업 추진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2,510	14,549	-	7,961	
2023	7,280	4,908	-	2,372	
2024	2,800	-	-	2,8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급식지원팀장 서원일	담당자	임기제라급 김부경	전화	4289
-----	-----	------------	-----	-----------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소 약 66,000명		
사업목적	김포금쌀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에 따른 학교급식 질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제6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121,000	3,010,000	3,040,000	-30,000	-111,000	
국비	0	0	0	0	0	
도비	1,560,500	1,505,000	1,520,000	-15,000	-55,500	
시비	1,560,500	1,505,000	1,520,000	-15,000	-55,50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친환경 농산물 및 김포금쌀 지원 : 경정(3,010,000천원)-기정(3,040,000천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차액지원을 통한 김포금쌀 및 우수농산물(친환경 및 G마크 등)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고품질의 학교급식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도비 확정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관련 : 친환경급식지원센터-168(2024.01.05.)호 “2024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2023년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 2024. 2월 : 2024년도 김포금쌀 공급가 및 공급업체 확정에 따른 계약 안내
 - 2024. 3월 ~ 12월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및 김포금쌀(2024년도 단가)공급 및 월별 사업비 지급
 - ※ 2024년도 1월 ~ 2월 : 「학교급식 쌀 공급자협약」 계약에 따른 해당 월 2023년도 단가 적용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지원대상 : 총 87개교 - 지원금액 : 1,688톤 (농산물 1,132톤, 쌀 556톤)
2023	- 지원대상 : 총 87개교 - 지원금액 : 1,710톤 (농산물 1,081톤, 쌀 578톤)
2024	- 지원대상 : 총 87개교 - 지원금액 : 0톤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131,400	2,864,679	-	266,721	
2023	3,121,000	2,839,608	-	281,392	
2024	3,040,000	-	-	3,04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급식지원팀장 서원일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90
-----	-----	------------	-----	------------	----	------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 차액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소 약 66,000명		
사업목적	우수한 식재료 차액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제6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115,115	1,075,115	80,000	995,115	-40,00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비	1,115,115	1,075,115	80,000	995,115	-40,000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95,115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등 차액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등 차액지원 : 경정(1,075,115천원)-기정(80,000천원)	= 995,115	

□ 예산요구 사유

- Non-GMO를 비롯한 우수 국내산 가공식품 및 관내 생산품 사용권장에 따른 차액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대비 지원규모 부족분 발생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월 : 2024년도 우수 가공식품 단가협상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24. 2월 : 2024년도 학교대상 사업홍보
- 2024. 3월 ~ 12월 : 학교별 계약체결(시 선정 공급업체) 및 사업실시
- 2024. 12월 : 학교별 사업 정산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참여대상 : 87개 조리교·원(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품목 : 135개 품목 - 지원금액 : 1,128,081,280원
2023	- 참여대상 : 87개 조리교·원(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품목 : 180개 품목 - 지원금액 : 1,049,750,830원
2024	- 참여대상 : 87개 조리교·원(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품목 : 미정 ※ 2024년 2월 지원품목 및 단가협상을 진행 후 사업추진 - 지원금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129,115	1,128,081	-	1,034	
2023	1,115,115	1,049,751	-	65,364	
2024	80,000	-	-	8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급식지원팀장 서원일	담당자	임기제라급 김부경	전화	4289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축산과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기간	2024. 5. ~ 2024. 8.	사업위치	관내 양계농가
사업규모	3,000kg		
사업목적	폭염 시작 전 가축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폭염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0,000	30,000	15,000	15,000	10,000	
국비		0		0	0	
도비	4,000	6,000	6,000	0	2,000	
시비	16,000	24,000	9,000	15,000	8,000	
기타		0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206-01 재료비	· 면역증강제 : 경정(10,000원*3,000kg)-기정(10,000원*1,500kg)	= 15,000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여 폭염, 자연재해 등 피해 예방

예산증감 사유

- 면역력 증강제 사업량 변경(1,500kg → 3,000kg)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3. : 면역증강제 구입계획 수립
- 2024.03.~2024.05. : 면역증강제 선정 및 구입
- 2024.06.~2024.08. : 면역증강제 공급
- 2024.09.~2024.12. : 공급내역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36,000천원 -사업량 : 1,275L(255통/5L, 양계 19농가) -집행액 : 35,883천원
2023	-예산액 : 20,000천원 -사업량 : 635L(127통/5L, 양계 20농가) -집행액 : 19,898천원
2024	-예산액 : 15,000천원 -사업량 : 1,500kg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6,000	35,883		117	
2023	20,000	19,898		102	
2024	15,000	0		15,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9급 이원택	전화	4304
-----	-----	----------	-----	----------	----	------

가축행복농장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5개소		
사업목적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업 기반육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도지사는 인증 받은 가축행복농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가축의 행복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00,000	419,500	200,000	219,500	19,500	
국비					0	
도비	80,000	75,763	60,000	15,763	-4,237	
시비	320,000	343,737	140,000	203,737	23,737	
기타	400,000	419,500	200,000	219,500	19,5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9,500	
가축행복농장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사육환경개선 : 경정(419,500,000원)-기정(200,000,000원)	= 219,5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사환경(온도, 습도, 화재 등) 관리시설 개선, 환경개선(환경관리기·환풍기 등) 등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으로 축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가축행복농장 사업대상자 확대(2개소→5개소)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
- 2024.09. : 2025년 사업대상자 접수(경기도)
- 2024.02.~2024.12. :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607,100천원 -사업량 : 7개소(이월1개소 포함) -집행액 : 501,907천원(6개소 집행)
2023	-예산액 : 487,527천원 -사업량 : 6개소(이월1개소 포함) -집행액 : 487,476천원(6개소 집행)
2024	-예산액 : 200,000천원 -사업량 : 2개소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607,100	501,907	87,527	17,666	
2023	487,527	487,476		51	
2024	200,000			20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민천홍	전화	4302
-----	-----	----------	-----	----------	----	------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한우농가
사업규모	개량분야 3,350(두), 경영개선 및 시설개선 1,012(kg, 개, 두, 개소)		
사업목적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76,522	120,650	128,150	-7,500	-55,872	
국비		0			0	
도비	35,305	36,195	38,445	-2,250	890	
시비	141,217	84,455	89,705	-5,250	-56,762	
기타	58,322	53,650	58,150	-4,500	-4,672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00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개량사업 : 경정(67,000,000원)-기정(77,750,000원) = -10,750 · 경영 및 시설개선사업 : 경정(53,650,000원)-기정(50,400,000원) = 3,250		

□ 예산요구 사유

-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개량사업 사업량 3,410두에서 3,350두로 60두 감소
- 경영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량 518(두, 개소, kg, 개)에서 1,012(두, 개소, kg, 개) 사업량 변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공모
- 2024.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04.~2024.12. :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253,450천원 -사업량 : 3,593두(개소) -집행액 : 74,936천원
2023	-예산액 : 176,522천원 -사업량 : 4,050두(개소) -집행액 : 74,936천원
2024	-예산액 : 128,150천원 -사업량 : 3,928두(개소)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53,450	74,936		178,514	
2023	176,522	176,521		1	
2024	128,150			128,15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민천홍	전화	4302
-----	-----	----------	-----	----------	----	------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육우 사육농가
사업규모	5,591두, 57개/개소/명		
사업목적	깨끗한 목장환경 개선 및 젖소 개량과 산유능력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39,800	107,250	101,950	-32,550	
국비		0		0	
도비	27,960	21,450	20,390	-6,510	
시비	111,840	85,800	81,560	-26,040	
기타	131,400	90,850	85,560	-40,5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300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개량사업 : 경정(47,200,000원)-기정(50,200,000원) = -3,000 · 경영개선·시설개선사업 : 경정(60,050,000원)-기정(51,750,000원) = 8,300		

□ 예산요구 사유

- 사육환경개선,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환경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낙농육우산업 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자율사업(경영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량 확대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4.02.~2024.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03.~2024.12. : 사업 집행
- 2024.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148,250천원 -사업량 : 7,028두/개소/대 -집행액 : 148,250천원
2023	-예산액 : 139,800천원 -사업량 : 5,027두/개소/대 -집행액 : 139,098천원
2024	-예산액 : 101,950천원 -사업량 : 4,644두/개소/대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48,250	148,250		0	
2023	139,800	139,098		702	
2024	101,950	0		101,95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9급 이원택	전화	4304
-----	-----	----------	-----	----------	----	------

축산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수분조절제 3,400톤, 미생물제 8,000kg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10,000	270,000	220,000	50,000	60,000	
국비		0			0	
도비	42,000	54,000	44,000	10,000	12,000	
시비	168,000	216,000	176,000	40,000	48,000	
기타	210,000	270,000	220,000	50,000	6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축산환경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분조절제 : 경정(100,000원*3,400톤*50%)-기정(10,000원*2,400톤*50%) = 50,000 · 미생물제 : 경정(25,000원*8,000kg*50%)-기정(50,000원*4,000원*50%) = 0		

□ 예산요구 사유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악취민원 해소 및 분뇨적정처리 자원화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미생물제 4,000kg에서 8,000kg 증가 및 지원단가 변경 증액, 수분조절제 사업량(수분조절제 2,400톤에서 3,400톤) 증가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공모
- 2024.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04.~2024.12. :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395,800천원 -사업량 : 수분조절제 2,880톤, 미생물제 10,000kg -집행액 : 382,713천원
2023	-예산액 : 210,000천원 -사업량 : 수분조절제 1,700톤, 미생물제 10,000kg -집행액 : 210,000천원
2024	-예산액 : 220,000천원 -사업량 : 수분조절제 2,400톤, 미생물제 4,000kg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95,800	382,713		13,087	
2023	210,000	210,000		-	
2024	220,000			22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민천홍	전화	4302
-----	-----	----------	-----	----------	----	------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1개소		
사업목적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로 환경, 수질오염 사전 방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법령 위임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0,000	235,000	265,000	-30,000	225,000	
국비					0	
도비	2,000	47,000	53,000	-6,000	45,000	
시비	8,000	188,000	212,000	-24,000	180,000	
기타	10,000	235,000	265,000	-3,000	225,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축산악취저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가축분뇨자원화 : 경정(190,000,000원)-기정(265,000,000원) = -75,000 .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 45,000,000원 = 45,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분뇨자원화 및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악취민원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축산악취 저감시설 사업량 변경(가축분뇨 자원화시설 1개소 감소, 축분처리장비 3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3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 2024.03.~2024.11. : 사업집행
- 2024.11.~2024.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25,000천원 -사업량 : 안개분무기계 등 1개소 -집행액 : 18,550천원
2023	-예산액 : 10,000천원 -사업량 : 독립형 악취저감기 등 1개소 -집행액 : 10,000천원
2024	-예산액 : 265,000천원 -사업량 :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3개소, 퇴비사 개선 2개소, 가축분뇨 교반장비 4개소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5,000	18,550		6,450	
2023	10,000	10,000		-	
2024	265,000	0		265,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03
-----	-----	----------	-----	----------	----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단체
사업규모	사일리지 2,000톤		
사업목적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가축사양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법령 위임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56,484	114,084	142,605	-28,521	-42,400	
국비	52,000	38,028	47,535	-9,507	-13,972	
도비					0	
시비	104,484	76,056	95,070	-19,014	-28,428	
기타	17,442	12,676	15,845	-3,169	-4,76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8,521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일리지 : 경정(63,380원*2,000톤*90%)-기정(63,380원*2,500톤*90%) =	-28,521	

□ 예산요구 사유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사일리지 제조·운송 사업량 감소(2,500톤 → 2,000톤)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2. : 보조사업 공모,
- 2024.03. :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 2024.03.~2024.12. :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316,500천원 -사업량 : 5,861톤 -집행액 : 38,025천원
2023	-예산액 : 156,726천원 -사업량 : 2,748톤 -집행액 : 62,550천원
2024	-예산액 : 142,605천원 -사업량 : 2,500톤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16,500	38,025		277,830	
2023	156,726	62,550		94,176	
2024	142,605			142,605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민천홍	전화	4302
-----	-----	----------	-----	----------	----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860개, 1농가, 8,000kg		
사업목적	꿀벌에 의한 화분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15,100	42,450	25,150	27,350	
국비		0		0	
도비	4,530	12,735	7,545	8,205	
시비	10,570	29,715	17,605	19,145	
기타	15,100	40,450	23,150	25,3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300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면역증강제 : 20,000원*500개*50% · 양봉 전용사료 : 경정(4,000원*8,000kg)-기정(4,000원*5,000kg) · 품질검사 : 경정(110,000원*60회*50%)-기정(100,000원*60회*50%)	= 5,000 = 12,000 = 300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자연화분, 품질검사 등 경상적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들의 경영 안정

□ 예산증감 사유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경기도 내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4.02.~2024.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03.~2024.12. : 사업 집행
- 2024.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8,875천원 -사업량 : 밀원수묘목 150수, 품질검사 60회, 자연화분 1,500kg, 면역증강제 40개 -집행액 : 8,875천원
2023	-예산액 : 15,100천원 -사업량 : 밀원수묘목 200수, 품질검사 30회, 자연화분 3,339kg -집행액 : 15,100천원
2024	-예산액 : 25,150천원 -사업량 : 밀원수묘목 300수, 품질검사 60회, 양봉전용사료 5,000kg, 여왕벌 육성농가 1개소 -집행액 : 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875	8,875		0	
2023	15,100	14,656		444	
2024	25,150	0		25,15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9급 이원택	전화	4304
-----	-----	----------	-----	----------	----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494개		
사업목적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4,130	16,100	10,600	5,500	-8,030	
국비		0			0	
도비	7,239	4,830	3,180	1,650	-2,409	
시비	16,891	11,270	7,420	3,850	-5,621	
기타	24,130	16,100	10,600	5,500	-8,03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00	
양봉산업 현대화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EPP별동 : 경정(50,000원*400개*50%)-기정(45,000원*400개*50%) · 말별퇴치장비 : 50,000원*90개	= 1,000 = 4,500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현대화된 시설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품질의 양봉산물 생산

□ 예산증감 사유

- 양봉산업 현대화지원 사업량 변경(말별퇴치장비 90개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4.02.~2024.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03.~2024.12. : 사업 집행
- 2024.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6,045천원 -사업량 : 채밀기1대, 상차용리프트1대, 양봉복합기1대, 사료용해기1대, 벌꿀이송펌프1대, EPP벌통62대, 창고 2개소 -집행액 : 6,045천원
2023	-예산액 : 24,130천원 -사업량 : 탈봉기 1대, 채밀기 2대, 상차용리프트 1대, 양봉전동카 1대, 벌꿀이송펌프 2대, EPP벌통 148대, 저온냉장고 1대, 이동양봉 관리실 1대, 도난방지용 CCTV 2대 -집행액 : 24,130천원
2024	-예산액 : 10,600천원 -사업량 : EPP벌통 400개, CCTV 4개 -집행액 : 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6,045	6,045		0	
2023	24,130	24,130		0	
2024	10,600	0		10,6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9급 이월택	전화	4304
-----	-----	----------	-----	----------	----	------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말사육농가 및 승마장
사업규모	보험 4두, 장제 7두, 톱밥 21톤		
사업목적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4,376	4,500	-124	4,376	
국비		0			0	
도비		1,313	1,350	-37	1,313	
시비		3,063	3,150	-87	3,063	
기타		4,375	4,500	-125	4,375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4	
승마장 육성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험 : 경정(700,000원*4두*50%)-기정(700,000원*5두*50%) · 장제 : 경정(100,000원*7두*50%)-기정(100,000원*10두*50%) · 톱밥 : 경정(2,626,000원)-기정(2,250,000원)	= = =	-350 -150 376

□ 예산요구 사유

-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에 필요한 경상적 지원으로 말산업 경쟁력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4.02.~2024.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03.~2024.12. : 사업 집행
- 2024.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2023	
2024	-예산액 : 4,500천원 -집행액 : 0원 -집행잔액 : 4,5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0	0		0	
2023	0	0		0	
2024	4,500	0		4,5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9급 이원택	전화	4304
-----	-----	----------	-----	----------	----	------

살처분 보상금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가축질병(구제역·AI, ASF, LSD, 결핵, 브루셀라 등) 발생 시 감염축 살처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025,600	1,911,650	2,000,000	-88,350	-3,113,950	
국비	4,228,200	1,321,600	1,600,000	-278,400	-2,906,600	
도비	528,525	165,200	200,000	-34,800	-363,325	
시비	268,875	424,850	200,000	224,850	155,9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8,350	
살처분 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살처분보상금 - 가축전염병 등 감염축 살처분 보상 *농가별 축종별 연령별 시세, 두수 등에 따라 보상액 상이	=	-348,000
	301-14 기타보상금	◎ 살처분보상금('23년 간주예산 이월분에 대한 시비 매칭) - 간주예산 편성 국도비 90%에 매칭되는 시비 10% 편성	=	259,650

□ 예산요구 사유

- '23~'24년 중부이남 AI 다발로 살처분보상금(국비) 부족 예상되어 경기도권 보상금 감액
- '23년 하반기 발생한 렘피스킨 소 사육 5개 농가에 대해 긴급 내시. 종말 추경 이후로 간주 예산(시비 비매칭)을 편성하고 이월하였던 국도비에 대해 매칭되는 시비 10%를 증액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3년말 긴급 내시한 렘피스킨 발생 소 사육 5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시비 10% 매칭.
- 23.12. 내시액(순증) : 국비(80%) 2,077,200천원, 도비(10%) 259,650천원, 시비(10%) 259,65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1.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 2024.01.~12. : 가축질병(ASF, 구제역·AI, 결핵, 브루셀라, 렘피스킨 병 등) 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
- 2024.1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1,540,000천원 -사업량 : 6호 (결핵 농가 2, 질병검진폐사 1, 백신부작용 폐사 2, ASF 살처분 가지급 1) -집행액 : 638,929천원
2023	-예산액 : 5,926,671천원 -사업량 : 4호 (AI 발생 가지급 1, ASF 발생 가지급 2, ASF 관련 지육 폐기 1) -집행액 : 3,589,821천원
2024	-예산액 : 4,336,850천원 -사업량 : 5호 (렘피스킨 발생 가지급 5) -집행액 : 1,465,71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540,000	638,929	901,071	0	
2023	(이월) 901,071	901,071	0	0	
	5,025,600	2,688,750	2,336,850	0	
2024	(이월) 2,336,850	1,465,717	0	871,133	
	2,000,000	-	-	2,00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한규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14
-----	-----	-----------	-----	----------	----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가축매몰지
사업규모	6개소		
사업목적	ASF, 럼피스킨 등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618,750	18,751	12,500	6,251	-599,999	
국비	247,500	7,500	5,000	2,500	-240,000	
도비	55,687	1,688	1,125	563	-53,999	
시비	315,563	9,563	6,375	3,188	-306,000	
기타		0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251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206-01 재료비	· 매몰지 관리제 구입 : 경정(18,751,000원)-기정(12,500,000원)	= 6,251	

□ 예산요구 사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LSD) 매몰지 약취저감 및 미생물제 등 사후관리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매몰지 사후관리 대상 증가(ASF 2개소 → ASF·LSD 6개소)로 관리 비용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기본계획 수립
- 2024.02.~2024.12. : 약취저감제 및 미생물제재 구입, 사용
- 2024.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985,242천원 -사업량 : 매몰지 15개소 소멸화 처리 -집행액 : 705,473천원(이월 167,246천원)
2023	-예산액 : 785,996천원(이월 167,246천원 포함) -사업량 : 매몰지 19개소 소멸화 처리 -집행액 : 585,738천원(이월 98,598천원)
2024	-예산액 : 111,098천원(이월 98,598천원 포함) -사업량 : 매몰지 소멸화 용역 5개소 진행중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985,242	705,473	167,246	112,523	
2023	785,996	585,738	98,598	101,660	이월 167,246
2024	12,500	-	-	12,5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한 규	담당자	수익7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축산농가 및 반려견 사육가정
사업규모	18개질병 17,888,300마리		
사업목적	돼지열병, 소 설사병, 닭 뉴캐슬, 개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18종 예방백신 구입·접종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74,148	391,404	390,134	1,270	17,256	
국비	105,045	110,925	110,076	849	5,880	
도비	47,029	48,560	48,457	103	1,531	
시비	222,074	231,919	231,601	318	9,845	
기타	34,400	34,400	34,400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70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06-01 재료비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17,845,300마리) : 경정(391,404,000원)-기정(390,134,000원)	= 1,27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법정가축전염병 병류별 백신을 공급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약품구입 조달수수료 추가 내시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기본계획 수립
- 2024.01.~2024.02. : 가축방역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협의 및 선정)
- 2024.03.~2024.12. : 사업집행(예방접종사업 6월 전 조기집행, 돼지썩코백신 반기별 집행)
- 2024.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예산액 : 409,624천원 -사업량 : 축산농가 백신 19종 18,512,078마리분 접종 -집행액 : 363,399천원
2023	-예산액 : 374,148천원 -사업량 : 축산농가 백신 17종 22,045,374마리분 접종 -집행액 : 351,315천원
2024	-예산액 : 390,134천원 -사업량 : 축산농가 백신 선정 협의 18종 -집행액 : 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09,624	363,399	-	46,255	
2023	374,148	351,315	-	22,833	
2024	390,134	-	-	390,134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한 규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사업기간	2024. 1. ~ 2024. 6.	사업위치	2022~2023 돼지 ASF 살처분 농가
사업규모	3농가		
사업목적	ASF 발생관련 살처분한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급으로 농가 최소 생계비용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4,966	0	4,966	4,966	
국비		3,476		3,476	3,476	
도비		0			0	
시비		1,490		1,490	1,490	
기타		0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66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301-14 기타보상금	·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지급 : 4,966,000원	= 4,966	

□ 예산요구 사유

- `22~`23년 ASF 발생 살처분 농가 3개소 생계유지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2~`23년 ASF 발생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부족분에 대해 농식품부 내시 및 교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0.03. : 예산수립
- 2024.03. : 생계안정비용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한 규	담당자	수익7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장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교육장비 현대화를 통한 기술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효과 제고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21조 4항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20,000	0	20,000	20,000	
국비		0		0	0	
도비		10,000		10,000	10,000	
시비		10,000		10,000	10,00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농촌지도장비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교육장 메인스피커 : 1,300,000원*4세트	=	5,200
		. 교육장 앰프 : 900,000원*2세트	=	1,800
		. 교육장 랙 케이스 : 500,000원*2세트	=	1,000
		. 교육장 무선 마이크 : 2,300,000원*2세트	=	4,600
		. 교육장 마이크스탠드 : 80,000원*6세트	=	480
		. 교육장 사운드믹서 : 1,260,000원*2세트	=	2,520
		. 교육장 전원순차기 : 1,200,000원*2세트	=	2,400
		. 교육장 강의실PC : 1,000,000원*2세트	=	2,000

예산요구 사유

- 강의실을 활용한 원활한 교육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음향 장비 교체

예산증감 사유

- 엘리트교육관 2개소 음향장비 등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 고장으로 인한 장비 교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교육홍보장비 구입 계획 수립
- 2024. 1. ~ 2024. 12. : 교육홍보장비 구입 진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경호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4334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술지원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성화 활력화 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13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농업인 기술보급 교육 및 컨설팅 등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으로 농업 애로사항 해결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제20조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10,00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시비		7,000		7,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농업인상담소 지역특성화 활력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 신기술, 품목 보급 교육, 컨설팅 등 운영 : 1,600,000원	= 1,600	
	201-03 행사운영비	· 농업 신기술, 품목 보급 교육, 컨설팅 등 : 1,200,000원*7개소	= 8,4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별 농업인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 농업 현장 행정 실현
- 농업 현장 의견 반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농업기술보급 효율 극대화

□ 예산증감 사유

- 농업인상담소별 지역 농업인 대상 자체 교육 운영비 수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계획수립
- 2024. 1.~12. : 읍면동별 상담소 운영 및 교육, 컨설팅 등 운영
- 2024. 12. : 결과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구형진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선정	전화	4363
-----	-------	------------	-----	-----------	----	------